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(02-2156-9910)	담 당 자	차 영 호 사무관 (02-2156-9923)	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(02-3145-7290)		정 두 회 팀 장 (02-3145-7313)	
			이 승 민 반 장 (02-3145-7297)	

제 목 :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정은보)는 2016. 5. 18. 제9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하여 **증권발행제한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**

※ 붙임 :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http://www.fss.or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9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6.5.18. 의결)

(회계조사국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서울상호저축은행 결산기 : 2012.6.30. 비상장법인 (舊유기증권사정상정법인) 업종 : 상호저축은행업	【회사】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(47,877백만원) ○ 회사는 담보목적 이외의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고 장기연체 대출채권 및 PF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②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(2,234백만원) ○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감정평가액(4,106백만원)이 장부가액(6,340백만원)에 미달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③ 소송관련 총당부채 과소계상(360백만원) ○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건물명도소송(1심)에서 일부 패소하였음에도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[2011.7.1.~2012.6.30.] 당기순이익 △98,322 → △148,793 자기자본 14,036 → △36,435	회 사 : - 증권발행제한 10월 (2016.5.18.~2017.3.17.) - 감사인지정 3년(생략) * 회사는 파산선고 및 영업인가 취소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'감사인지정'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부과하지 아함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SBC벤처(주)</p> <p>결산기 :2009.12.31. 2010.12.31. 2011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: 주철관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(’09년 7,191백만원, ’10년 14,165백만원 ’11년 19,13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파손, 불량, 진부화 등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(19,133백만원)을 과대계상함</p> <p>[2009 회계연도]</p> <p>당기순이익 1,353 → △5,839 자기자본 13,027 → 5,836</p> <p>[2010 회계연도]</p> <p>당기순이익 1,002 → △5,972 자기자본 14,029 → △136</p> <p>[2011 회계연도]</p> <p>당기순이익 △7,076 → △12,044 자기자본 6,953 → △12,180</p>	<p>회 사 :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 (2016.5.18.~2016.9.17.)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※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

- 감사인 지정
 -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
-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
 -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.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(증권), 유가증권(증권)의 사모발행(채권자 출자전환 포함),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
- 과징금
 -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,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
 -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(100%이내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
- 등록취소 건의
 -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
- 직무정지 건의
 -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
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 - 주권상장법인(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)·‘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’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
- 주권상장(코스닥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 - 주권상장법인(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)·‘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’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
 -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